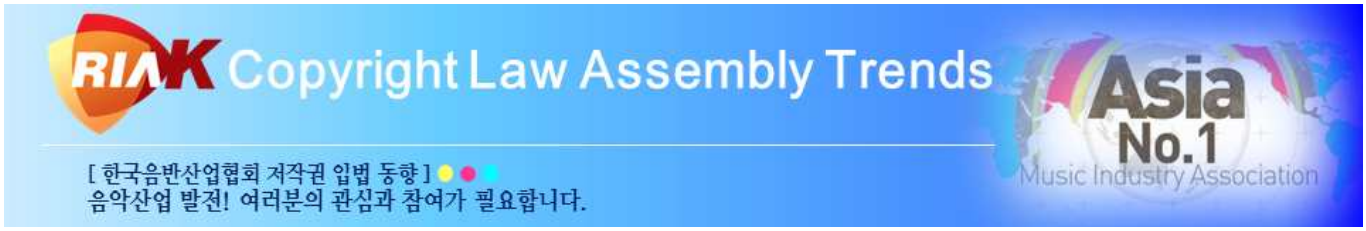

2014. 7. 14.

저작권 입법 동향 보고

개 요

❑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안에 대한 경과사항을 분석·보고함.

❑ 2013년 6월 ~ 12월, 2014년 1월 ~ 7월 저작권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심사진행 경과

구분	2013년 6~12월	2014년 1월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4년 4월	2014년 5월	2014년 6월	2014년 7월	총 계
저작권법	11	-	-	-	1	-	시행1	-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	-	-	-	-	-	-	7

저작권법 입법안 심사진행 경과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93호(2013. 6. 14. 제안)

가. 제안자

- 박홍근 의원 등 10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판매용 음반의 정의 신설 :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 복제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 진행 경과

- 2013. 6. 14. 입법 제안 → 2013. 6. 17.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2. 14.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4. 4. 16.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상정)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04호(2013. 7. 8. 제안)

가. 제안자

- 유기홍 의원 등 10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보상금 면제 범위 확대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사유재산이므로 저작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3년이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함

다. 진행 경과

- 2013. 7. 8. 입법 제안 → 2013. 7. 9.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2. 14. 제322회 국

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34호(2013. 7. 10. 제안)

가. 제안자

- 박홍근 의원 등 12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 함)의 복수단체 추진과 관련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인을 제외

다. 진행 경과

- 2013. 7. 10. 입법 제안 → 2013. 7. 11.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2. 14.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54호(2013. 7. 12. 제안)

가. 제안자

- 최민희 의원 등 15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추가하고, 그 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
-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위”라고 함)를 구성
- 저작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사용료의 요율·금액·분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가 해당 분과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 저작위의 업무에 사용료의 분배에 관한 사항의 심사 추가

다. 진행 경과

- 2013. 7. 12. 입법 제안 → 2013. 7. 15.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4. 11.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75호(2013. 7. 15. 제안)

가. 제안자

- 박성호 의원 등 10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교육 등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진행 경과

- 2013. 7. 15. 입법 제안 → 2013. 7. 16.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2. 14.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83호(2013. 7. 16. 제안)

가. 제안자
- 윤관석 의원 등 11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전문인력 양성 및 건전한 저작권산업 조성을 위한 권위 있는 저작권 관련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
- 효과적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저작권보호원의 신설(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위원회의 통합)

다. 진행 경과
- 2013. 7. 16. 입법 제안 → 2013. 7. 17.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2. 14.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51호(2013. 7. 18. 제안)

가. 제안자
- 정부

나. 주요 제안 내용
-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 허용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등록 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제도 도입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권리자 간 계약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의 일부 신탁 요청에 대한 수락 의무 신설
-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다. 진행 경과
- 2013. 7. 18. 입법 제안 → 2013. 7. 19.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4. 11.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67호(2013. 7. 26. 제안)

가. 제안자
- 이군현 의원 등 14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
- 공연권 제한 대상 축소 : 자선목적 또는 종교시설에서의 비영리 공연 등으로 한정
- ‘판매용 음반’을 ‘음반’으로 변경 (판매용 문구 삭제)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 및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 삭제
-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징수액의 1/10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다. 진행 경과
- 2013. 7. 26. 입법 제안 → 2013. 7. 29.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3. 12. 9.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4. 4. 16.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상정)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3호(2013. 9. 25. 제안)

가. 제안자
- 윤관석 의원 등 10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의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다. 진행 경과

- 2013. 9. 25. 입법 제안 → 2013. 9. 26.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4. 11.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08464호(2013. 12 9. 제안)

가. 제안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나. 주요 제안 내용

- 현행 「저작권법」의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전시" 및 "공중송신"이 포함되도록 함.

다. 진행 경과

- 2012. 9. 21. (윤관석의원 등 20인), 2012. 10. 30. (김윤덕 의원 등 16인)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 2013. 10. 2. 교육문화체육위원회(소관위) 대안가결 (2012. 9. 21.자 발의 등 2건 대안반영폐기) → 2013. 10. 2.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회부 → 2013. 12. 9.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원안가결 → 2013. 12. 9. 제320회 정기국회 전체회의 안건상정 → 2013. 12. 10. 제320차 정기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 2013. 12. 10. 정부이송 → 2013. 12. 30. 공포 → 부칙 제12137호에 따라 2014. 6. 30.부터 시행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55호(2013. 12. 19. 제안)

가. 제안자

- 박혜자의원 등 12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원래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므로 이를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

다. 진행 경과

- 2013. 12. 19. 입법 제안 → 2013. 12. 20.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 4. 25. 제안)

가. 제안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자의 피해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돠고합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리 목적의 소규모(6개월 동안 100만원 미만)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36조제1호)

다. 진행 경과

- 2013. 11. 19. (김희정의원 등 10인), 2014. 3. 20. (김태년의원 등 12인), 2014. 4. 1. (이상민의원 등 10인), 2014. 4. 21. (박기춘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 2014. 4. 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 소위 대안가결 (2013. 11. 19.자 발의 등 4건 대안반영폐기) → 2014. 5. 2.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제2소위 회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안 심사진행 경과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53호(2013. 7. 12. 제안)

가. 제안자

- 최민희 의원 등 15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음악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상 저작위의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을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다. 진행 경과

- 2013. 7. 12. 입법 제안 → 2013. 7. 15.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4. 11.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358호(2013. 8. 13. 제안)

가. 제안자

- 최민희 의원 등 11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진행 경과

- 2013. 8. 13. 입법 제안 → 2013. 8. 14.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4. 11.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22호(2013. 9. 6. 제안)

가. 제안자

- 정부

나. 주요 제안 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등 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양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노래연습장에서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다. 진행 경과

- 2013. 9. 6. 입법 제안 → 2013. 9. 9.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4. 11.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317호(2013. 10. 21. 제안)

가. 제안자

- 강은희 의원 등 10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음반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반 등 관련업자, 저작재산권자, 실연자가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리거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 음반 등 관련업자가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팔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음반 등 관련업자로 하여금 음반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반 등 관련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진행 경과

- 2013. 10. 21. 입법 제안 → 2013. 10. 22.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4. 4. 11.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975호(2013. 11. 22. 제안)

가. 제안자

- 이낙연의원 등 10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행정법규 중 규정된 행정형벌 가운데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다. 진행 경과

- 2013. 11. 22. 입법 제안 → 2013. 11. 25.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3. 12. 9.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153호(2013. 11. 28. 제안)

가. 제안자

- 박창식의원 등 11인

나. 주요 제안 내용

- 행정법규 중 행정형벌 사이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

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고, 벌금형은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며,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항).

다. 진행 경과

- 2013. 11. 28. 입법 제안 → 2013. 11. 29.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3. 12. 9.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486호(2013. 12. 10. 제안)

가. 제안자

- 박성호의원 등 12인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가 음반 등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경우 음반 등의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음반 등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진행 경과

- 2013. 12. 10. 입법 제안 → 2013. 12. 11. 소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본 'Copyright Law Assembly Trends'는 매월 저작권법 입법동향 및 국회 접수 법률안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Copyright Law Assembly Trends'를 전재, 재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Copyright Law Assembly Trends'는 월 1회 E-Mail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수신을 추가로 원하시는 분은 news@riak.or.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news@riak.or.kr로 회신해 주시면 수신거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더팬, 7층)
T. 02.3270.5900 F. 02.711.9735

Copyright © RIAK All Rights Reserved